

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 기준

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가.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

나. 무균상자(Clean Bench)

다. 해부현미경(Dissecting Microscope)

라. 도립현미경(Inverted Microscope)

마. 멸균기

바. 이산화탄소배양기

사. 건식오븐

아.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(LN₂ tank)

자. 원심분리기

차. 항온판

2. 인력기준

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(의학·생물학·생화학·수의학·유전공학·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)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박사급 1명 이상과 석사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.

가. 박사급

1)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2)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
3)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나. 석사급

1) 석사학위 소지자

2)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
3) 의사 면허 소지자

다. 학사급

1) 학사학위 소지자

2)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